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서상열 의원
- 나. 의안번호: 제2774호
- 다. 발의일자: 2025. 5. 26.
- 라. 회부일자: 2025. 5. 29.

2. 제 안 사 유

- 현행 조례는 같은 영향 권역 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사업 규모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두 사업 간 시간적 간격이 과도하게 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합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평가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간 시간 간격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하고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같은 영향 권역 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간의 간격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두 사업의 사업 규모를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 신설(안 별표 1 비고 제4호).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 영향 권역에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간격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규모를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별표 1] 비고 제4호

4.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사업 승인등의 당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1)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또는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고, 사업 승인등으로부터 15년 이내에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규모의 합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이 기존 사업 승인등으로부터 15년 이내에 승인등이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다.

다.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1)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또는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고, 사업 승인등으로부터 15년 이내에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와의 합이 평가대상 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규모의 합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이 기존 사업 승인등으로부터 15년 이내에 승인등이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다.
-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안 별표 1)은 동일 영향권역 내에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간격이 15년을 초과할 때는 사업계획 변경 또는 신규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 승인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평가대상 규모에 이르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적인 제도 운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오랜 기간(15년 이상)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업을 나누는 사례는 없을 것이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 역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역시 2025년 시정의 핵심 과제로 ‘규제철폐’를 내세우고 있고 그 일환으로 동 조례 개정(제330회 임시회)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15년이 지나도 기존 사업의 환경적 영향은 해소되지 않고 누적될 수 있고 시간 간격이 15년을 초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어 조례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에 사업 간격에 관한 평가대상 예외 규정이 없어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적인 제도 운용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법률에서 위임한 서울시 재량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만큼 법리 검토와 함께 소관 중앙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친 후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임.